

의정부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가단22906(본소), 2019가단22913(반소) 판결
[계약금반환청구 · 손해배상(기)]

전 문

원고(반소피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고(반소원고)C 주식회사

피고D

변론 종결 2020. 5. 14.

판결 선고 2020. 6. 18.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본소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C 주식회사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C 주식회사 사이의 생긴 부분 가운데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C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 피고 D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5,83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회사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투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쌀과 잡곡을 도매하는 회사이고, 피고회사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인천 서구 F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할인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며, 피고 D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7. 3. 29. 피고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회사에게 쌀과 잡곡을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D은 당시 원고에게 피고회사가 이 사건 물품거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5,00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회사는 이 사건 물품거래계약 당시 원고가 피고회사에게 최초거래 시작시 납품품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입점지원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되 납품품목 중 2개 품목 이상이 1개월 이상 발주되지 않으면 입점지원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피고회사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회사에게 그 무렵부터 쌀과 잡곡을 공급하면서 2017. 5. 1. 입점지원금으로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입점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E은 2019. 5. 27. 피고회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9가합56868호로 피고회사가 임차하여 할인마트를 운영하는 건물 부분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2019. 8. 하순경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회사에 대한 쌀과 잡곡의 공급을 중단하고, 그 때까지 피고회사가 지급하지 아니한 물품대금 70,352,283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9. 8. 26.

의정부지방법원 2019카단1649호로 피고회사가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신용판매대금 채권 중 30,352,283원,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신용판매대금 채권 중 2,000만 원 및 I 주식회사(이하 'T'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신용판매대금 채권 중 2,000만 원에 대한 채권가압류(이 사건 '채권가압류'라 한다)를 신청하여, 2019. 9. 9. 그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2019. 9. 5.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한 액면금 39,927,000원의 어음을 결제하고, 같은 달 7. 일부 물품을 반품하며, 같은 달 12. 나머지 물품대금 25,808,723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나, 원고는 피고회사로부터 이 사건 입점지원금 중 5,883,000원을 반환받을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6. 이 사건 채권가압류 신청 중 G에 대한 부분 가운데 5,883,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H 및 I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만 취하하고, 그 집행해제를 신청하였다.

사. 피고회사는 2019. 10. 10. 의정부지방법원 2019카단1899호로 이 사건 채권가압류 중 취하되지 않은 G에 대한 5,883,000원 부분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하여, 2020. 1. 10. 그 취소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본소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회사에게 이 사건 물품거래계약의 계약기간인 3년 동안 거래할 것을 조건으로 입점지원금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인데 피고회사가 E로부터 영업장소에 대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 당함에 따라 이 사건 물품거래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2019. 8. 하순경 거래를 종료하였으므로, 피고회사와 연대보증인 피고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입점지원금 3,000만원 중 계약기간 3년 가운데 거래를 하지 못한 7개월분에 해당하는 5,883,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회사가 최초거래 당시 납품품목 중 2개 품목 이상을 1개월 이상 발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입주지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의 이 사건 물품거래계약에 따른 거래가 중단된 것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쌀과 잡곡의 공급을 중단하였기 때문이고, 단순히 피고회사에게 영업장소를 임대한 E이 피고회사를 상대로 영업장소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회사가 이 사건 물품거래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사정이나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회사의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회사의 주장 요지

피고회사는,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회사와 사이의 이 사건 물품거래계약에 따른 거래를 중단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회사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물품거래계약의 계약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입점지원금 3,000만 원의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피고회사에게 입점지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채권가압류에 이르고, 그 중 G에 대한 30,352,283원의 채권가압류에 대한 집행해제를 해태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회사에게 소송절차 비용 상당의 실비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물품거래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물품거래계약에 따른 거래를 중단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입주지원금이 이 사건 물품거래계약의 계약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회사가 입주지원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채권가압류를 신청할 당시 피고회사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청구금액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이 존재하였으므로, 원고의 채권가압류 신청 자체가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그 후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원고가 채권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아닌 이 사건 입주지원금 중 5,883,000원의 반환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G에 대한 5,883,000원의 채권가압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입주지원금 중 5,883,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확정 후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회사가 입은 구체적인 손해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으며, 법인인 피고회사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피고회사에게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본소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청구 및 피고회사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정호채